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되어버린 비육돈 거래시  
가격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지역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집계되는  
돼지고기 지육가격의  
총평균이 되는 돈지육 총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노폐돈이나  
불량지육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격돈 지육  
평균가격을 비육돈 거래시에  
기준의 가격으로 삼아야  
한다.



장 민기 지부장  
(부천지부, 본지 편집위원)

## 비육돈 거래시 규격돈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산하자

3D업종(Dangerous, Difficulty, Dirty)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양돈 사업을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 국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의 커다란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막중한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좀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내일을 좀더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며 노력해왔다.

국제 곡물가격 파동으로 인하여 연 3차례나 인상된 사료값은 연초 대비 무려 30% 정도나 대폭 인상되어 양돈경영에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지경이고 앞으로도 가을쯤에 사료값을 한차례 더 올려야 된다고 하니 국내 축산업 보호에 지

극히 소극적인 정부의 축산정책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에 종사해야 할 것인지 앞이 막막할 따름이다.

이토록 어려운 업계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단결된 힘의 결집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스스로의 권익 보호에 모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에 필자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되어버린 비육돈 거래시 가격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지역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집계되는 돼지고기 지육가격의 총평균이 되는 돈지육 총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노폐돈이나 불량지육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격돈 지육 평균가격을 비육돈

거래시에 기준의 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 1. 기본사항

### 1) 거래형태의 비율

도매시장 상장 : 비상장(육 가공, 정육점, 기타) 30 : 70

2) 국내 비육돈 월간 생산두 수 : 약 100만두

3) 규격돈의 지육률: 66~69%

## 2. 현재의 비육돈 거래 관행

전체의 30% 정도는 축산물 도매시장을 통하여 도축된 후 지육으로 경락되므로 정당한 가격을 정산 받게되어 지극히 온당한 거래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70%에 해당하는 많은 양돈 농가는 매일 형성되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돈지육 총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67~70%를 비육돈의 생체 가격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총평균 가격에는 노폐돈을 비롯한 불량지육까지를 모두 통털어 합산 평균한 가격으로 비육돈 만의 지육가격은 아닌바 비육돈만의 평균가격은 총평균가격 보다 통상 지육 kg 당 204원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왔다.(표1참조)

〈표1〉에서 보면 1966.1.1~5.

〈표1〉 96.1~5월별 총평균 가격과 규격돈 평균가격의 비교

(단위 : 원/kg)

구분 \ 월	1	2	3	4	5	평균
총평균가	2,130	2,214	2,295	2,447	2,415	2,300
규격돈평균	2,317	2,383	2,493	2,673	2,655	2,504
차액	187	169	198	226	240	204

\* 서울지역 도매시장의 합계평균가격임

31까지의 규격돈의 지육 평균 가격은 2,504원인데 반해 현행 정산기준의 총평균가격은 이보다 204원이 낮은 2,300원이 된다.

이들 규격돈의 지육률을 67%로 가정하여 생체 가격을 환산하면

『2,504원×67%=1,678원』이 되고 이에 상응하는 총평균가 적용률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1,678원÷2,300원×100=73%』

따라서 규격돈으로 지육률 67%에 해당하는 돼지를 현행의 총평균가를 가격정산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73%를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계산 방법에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도축제비와 경매수수료가 고려되지 아니했고 아울러 부산물 수입도 고려되지 아니한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 축협공판장에 규격돈을 출하할 경우 해체수수료, 도축세, 검사료, 위탁판매수수료등 1두당 9,930원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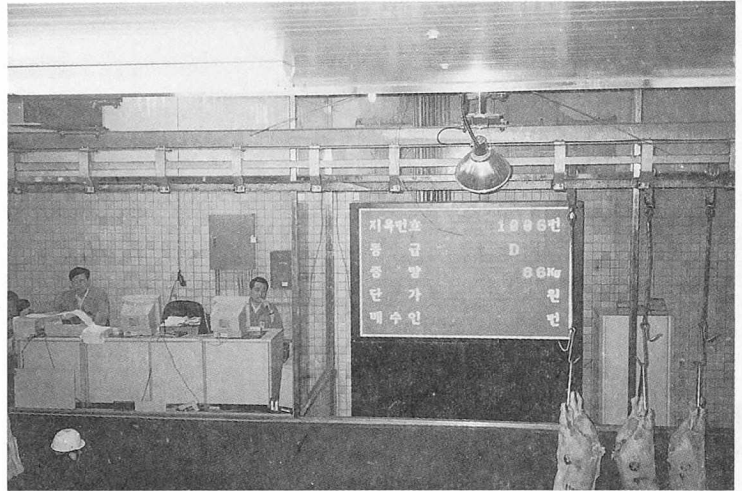
규격돈을 서울 축협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와 상응하는 정산을 관행대로 총평균가 기준 적용을 고집한다면 공판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다 할지라도 규격돈의 생체 kg당 가격의 올바른 정산 방법은 적어도 『총평균×71%』의 계산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이 발생되고 부산물 판매 수입금이 1두당 5,380원 정도이므로 차감하면 1두당 4,550원의 준비비용이 발생되어 생체 100kg의 규격돈이라면 생체 1kg당 41.50원의 준비비용이 발생된다.

규격돈을 서울 축협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와 상응하는 정산을 관행대로 총평평가 기준 적용을 고집한다면 공판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다 할지라도 규격돈의 생체 kg당 가격의 올바른 정산 방법은 적어도 『총평균×71%』의 계산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 3. 맺음말

규격돈을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좀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규격돈 생산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적정 사육공간을 유지하면서 육질개선을 위하여 단계별 사양 프로그램을 지키고 방역상 위험을 무릎쓰고 적어도 출하전 1개월 이상의 휴약기간을 꼭 지키면서 안전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규격돈이 축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못하고 규격돈 지육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총평평가격을 가격정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는 이의 잘못을 수년전에 파악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규격돈만의 경락가격을 따로 통계처리하여 매일 발표토록 하고 있는 바, 누구라도 규격돈의 평균가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수십년 동안의 관행을 깨지못해 불리한 점을 알면서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 양돈농가의 적극대응 결여(양돈협회를 통한 의지의 집결 요망)

둘째 : 육가공 및 판매업자의 실리적 관행 고수.

셋째 : 정부의 개선 노력 부족(양돈생산자와 육가공업자와의 중재요망)으로 요망되는 바 필자가 개별적으로 육가공업자와 만나 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면 그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기 혼자만이 개

선방안을 따를 경우 동종업체와의 경쟁관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실시는 난색을 표하고 다만 어느 시점에서 국내 전체가 일시에 실시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

끝으로 규격돈 거래 기준가격의 정립을 위해 양돈 생산자 단체, 육가공 단체, 정부 관련부서 등 연석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의하며 조속한 합의안 마련이 안될 경우 우선적으로 통계의 활용적 가치가 없는 노폐돈이나 불량지육의 경락가격까지도 모두 합산 평균처리한 총평균 지육가격의 발표를 삭제하여 규격돈의 평균 지육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쌍방 합의점을 찾아 거래 정상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